

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8. 9. 5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8. 9. 6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6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(98. 9. 16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)

가. 제안이유

-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용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 및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기금개정조례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·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 방지(안 제2조)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4조)
-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관리를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함(안 제5조)
- 기금운용·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조문 신설(안 제6조)
-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들을 규정함(안제7조 내지 제9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 내용 | 답변 내용 |
|---|--|
| ○ 기금은 각각 얼마이며, 당초부터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하지 못한 이유는? | ○ 기금 중 자연재해대책기금으로 2억8천9백만원,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9천2백원이며, 상위법이 각각 달라서 하나의 통합된 기금관리가 되지 못했음 |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반대의견 없이 전원 찬성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23호 |
| 의결년월일 | 98. 9. 22 (제64회) |

제출년월일 : 1998. 9. 11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·운용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 조례안(기획 13310-611, 98. 5. 1) 및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기금개정조례표준안(경기건설 13900-1089)에 부합 되도록 조례를 정비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·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혼선 방지(안 제2조)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5조)
-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함(안 제5조)
- 기금 운용·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토록 하되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조문 신설(안 제6조)
-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, 기금운용계획에

포함할 사항들을 규정함(안 제7조 내지 제9조)

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개정조례안

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부천시 재해대책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시장은 재해대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
제3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3조제2항은 규정에 의한 적립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기타 수입금 등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·정비를 요하는 사업
2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
3.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
4.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·수문·배수관·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
5. 하수도시설(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)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
6. 수리시설 중 배수장, 방조제, 용수로,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
7.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로서 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

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기금을 시급고에 예치·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.

③제2항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의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한다.

④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7조(기금운용계획)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회계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, 기금운영관은 자연재해업무담당국장이 기금출납원은 자연재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.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금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